

03 환경·기상·안전

1.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

환경부 수질관리과 ☎ 044) 201-7061

2016년 1월 1일부터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(이하, '수질법)」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, 폼알데하이드, 에피클로로하이드린, 톨루엔,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.

- 同 물질은 2013년 9월 5일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시 신규 수질오염물질*로 지정되었으나 업계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정화기술 확보 등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항목입니다.

* 위해성 높은 나프탈렌, 폼알데하이드, 에피클로로하이드린 3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

- 폐수배출시설로 허가(신고) 받은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, 이를 위반 시 개선명령,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.
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법령 > 현행법령 >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수질오염물질 지정·관리 주요내용

- 추진배경 국내 유통량, 인체위해성 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의 연차별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, 업계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지정·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

- 주요내용

| 물질명 | 지정배출 | 허용기준 (mg/L) |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| | 청정 | 가/나/특례 |
| 나프탈렌 | 특정수질유해물질 | 0.05 | 0.5 |
| 폼알데하이드 | | 0.5 | 5 |
| 에피클로로하이드린 | | 0.03 | 0.3 |
| 톨루엔 | 수질오염물질 | 0.7 | 7 |
| 자일렌 | | 0.5 | 5 |

- 시행일 2016년 1월 1일

2.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

환경부 수질관리과 ☎ 044) 201-7071

수질법에 따른 “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” 중 생태독성(TU) 적용 기준이 2016년 1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.

- 청정지역에 설치된 3종~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, 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
- 이에 따라 청정지역 3종~5종 사업장의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정도를 물벼룩의 생존 및 활동력을 통해 측정하는 TU 기준이 기존 2TU에서 1TU로, 적용 유예를 받았던 5개 업종도 기존 4TU~8TU가 2TU로 강화됩니다.
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법령 > 현행법령 >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

- 추진배경 생태독성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간 일부 지역 및 업종에 대해 완화하여 적용해오던 배출허용기준을 2016년부터 강화
- 주요내용 ① 청정지역에 설치된 3종~5종 폐수배출 사업장 및 유예 받았던 5개 업종에 대하여 기준 강화
- 시행일 2016년 1월 1일

2016년 기준강화 업종 및 대상 현황

| 구분 | 지역 | 기준강화 | 대상수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|
| 기준강화 사업장 합계 | | | 474 | |
| 3, 4, 5종 사업장 (전업종) | 청정 | TU 2→1 | 419 | |
| 유예 업종 | 소계 | | 55 | |
| | 18)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| 가, 나, 특례 | TU 4→2 | 18 |
| | 48)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| | 12 | |
| | 80) 도금시설 | | 14 | |
| | 31)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| TU 8→2 | 11 | |
| | 33)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| - | - | |

* 방류수 수질기준별 독성 산출기준

| 기준 | 방류수 | 희석수 | 설 명 |
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TU 1 | 100% | 0% | 방류수 원수에서 투입물벼룩 50% 영향 |
| TU 2 | 50% | 50% | 희석수에 방류수 50%를 혼합 후 투입물벼룩 50% 영향 |
| TU 4 | 25% | 75% | 희석수에 방류수 25%를 혼합 후 투입물벼룩 50% 영향 |

3.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

환경부 유역총량과 ☎ 044) 201-7025
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접 시·군·구 지역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.

-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지금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주민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했으나,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인접구역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금번 개정으로 지자체 간 인접지역에 대한 악취발생저감 등 생활환경보전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

- 추진배경 지자체 간 경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인접 지자체 간 협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
- 주요내용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접 시·군·구 지역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
-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(국회 법사위 통과, 2015년 10월 28일)

4. 생물자원의 기증·기탁·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

환경부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 ☎ 044) 201-7266

- 2017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에 따른 도입종 확보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함

생물자원 기증·기탁·이관 및 교환에 관한 규정

- 추진배경 2017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개원까지 생물자원 기증 등의 업무 절차를 정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
- 주요내용 ① 기증·기탁·이관 및 교환 대상 생물자원의 범위
② 기증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
③ 생물자원의 관리 및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
- 시행일 2015년 9월 25일

5.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

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☎ 044) 201-7277

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환경영향의 경·중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적용하여 왔으나, 3만㎡ 미만의 창고, 주택 등의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*한 소규모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.

* 「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)」
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법령 > 현행법령 > 환경영향평가법

6. 사전적격심사제도(PQ) 시행

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☎ 044) 201-7277

2016년 1월 2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·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.

-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·준정부 기관 등이 해당되며, 평가 대상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예정가격 2.1억 이상이 대상입니다.
- 따라서 2016년 1월 21일 이후 최초로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받게 됩니다.
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법령 > 현행법령 > 환경영향평가법

7.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 ☎ 044) 201-7361

‘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고시’에 시·군·구에서는 전년도 성과평가를 3월 31일 까지 실시하여 4월 30일까지 환경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• 억제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세부내용

| 발생억제 계획 수립 항목 [수립주기: 연도별 세부계획 포함 5년] | 연도별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|
|--|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음식물류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처리계획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목표 및 목표달성 방안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방안 [재원의 확보계획 포함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가주체: 자치단체 평가시기: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범위: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성과 평가방법: 평가위원회 설치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위원: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명, 의회추천 주민대표 4명, 환경분야전문가 4명 등 12명 세부평가기준: 환경부 장관 고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부 고시 제2015-164호[15. 9. 3] |
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법령 > 고시/훈령/예규

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

- 추진목적: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연도별 추진성과 평가
- 주요내용: 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,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을 마련
 - ※ 시·군·구에서는 최초 연도별 성과평가보고서를 환경부로 제출 (2016년 4월 30일까지)
- 시 행 일: 2015년 9월 3일

8.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

환경부 대기관리과 ☎ 044) 201-6909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개정·시행(2015년 7월 21일)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이 현행 6개(원유정제처리업, 제철업 등)에서 20개(고무제품·플라스틱·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)로 확대됩니다.

※ 비산배출 저감제도 적용대상 업종: 참고 2

- 2016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업종에서 관리대상물질(특정대기유해물질 등)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 시설과 물질취급량 파악자료, 시설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관할지역 환경청에 제출(신규공장: 가동개시 전, 기존공장: 2016년 6월 30일까지)하여야 합니다.

※ 비산배출 저감 업종별 관리대상물질: 참고 3

-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야하고,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되며,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게 됩니다.
- 환경부에서는 제도소개와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, 세부이행지침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설명회를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(2015년 12월~2016년 1월)하고, 관련자료(신고서·점검보고서 작성 요령,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)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에 게재할 예정입니다.
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정책(기후대기) - “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및 신고서 점검보고서 양식”

- 또한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사업(환경공단에 위탁)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제 주요내용

- 추진배경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/변경 신고 의무 부과
 -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: 300만원 이하 벌금
 -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: 200만원 이하 과태료
 - ② 신고/변경 신고 한 사업자는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과
 -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시 :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 - ③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 신청 의무 부과
 - 정기점검 미이행 : 300만원 이하 벌금
 - ④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
 - 정기점검 미이행 :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참고 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(신고 대상)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38조의 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

1.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대상업종 : 6개 업종

| 분 류 | 업 종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가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| 1) 원유정제 처리업 |
| 나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| 1)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) 합성고무 제조업 3)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|
| 다. 1차금속 제조업 | 1) 제철업 2) 제강업 |

2.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업종 : 20개 업종(14개 업종 추가)

| 분 류 | 업 종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가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제품제조업 | 1) 원유정제 처리업 |
| 나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| 1)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) 합성고무 제조업 3)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)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|
| 다. 1차금속 제조업 | 1) 제철업 2) 제강업 |
| 라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1)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) 플라스틱 필름, 시트 및 판 제조업 3)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) 플라스틱 포대,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5) 플라스틱 적층,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6)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|
| 마. 전기장비 제조업 | 1) 축전지 제조업 2)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|
| 바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| 1) 강선 건조업 2)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) 기타 선박 건조업 |
| 사.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| 1) 파이프라인 운송업 |
| 아.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| 1) 위험물품 보관업 |

참고 3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별 관리대상물질

- 공통 적용물질: 특정대기유해물질
- 업종별 적용물질

| 업 종 | 적용 물질 |
|--|--|
| 1) 원유정제처리업, 파이프라인 운송업, 위험물품보관업 | 메탄올, 메틸에틸케톤, 엠티비이(MTBE), 톨루엔, 자일렌(o-, m-, p- 포함) |
| 2)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, 합성고무 제조업,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| 톨루엔, 자일렌(o-, m-, p- 포함), 나프탈렌 |
| 3) 제철업 및 제강업 | 입자상물질(먼지), 망간화합물, 톨루엔, 자일렌(o-, m-, p- 포함) |
| 4)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| 톨루엔, n-헥산, 이소프로필 알콜, 메탄올, 아크릴산 에틸, 메틸에틸케톤 |
| 5)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, 플라스틱 필름, 시트 및 판 제조업,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, 플라스틱 포대,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, 플라스틱 적층,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,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| 톨루엔, 메틸에틸케톤, 자일렌(o-, m-, p- 포함) |
| 6) 축전지 제조업,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| 톨루엔, 자일렌(o-, m-, p- 포함) |
| 7) 강선 건조업, 선박 구성부품 제조업, 기타 선박 건조업 | 톨루엔, 자일렌(o-, m-, p- 포함) |

9.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

환경부 대기관리과 ☎ 044) 201-6902

수도권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해당지자체에 공개하는 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도입 운영됩니다.

-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1%가 비산먼지에서 발생되고 비산먼지 발생량 중 도로재비산먼지가 40%를 차지하는 등 차량주행시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오염우심지역의 도로 청소 우선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2016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 -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된 결과 미세먼지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지자체에 공개하게 되며, 해당 지자체는 이에 해당하는 도로 우선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법령 > 현행법령 >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
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

- 추진배경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량 중 도로재비산먼지 발생량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의 효율적인 도로청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 2차 수도권개선대책에 반영 (2013년 12월)
- 주요내용 ①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대기오염도 측정 및 측정결과가 미세먼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개 등 운영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10. 물 재이용 용도, 수질기준 현실화

환경부 생활하수과 ☎ 044) 201-7141

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정비하고, 용도에 맞게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 재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‘도시 재이용수’를 인체 접촉여부를 기준으로 건물 내부의 ‘청소·화장실용수(접촉)와 건물 외부의 ‘세척·살수용수(비접촉)’로 구분하고, 수질기준은 청소·화장실, 친수용수 등 인체 접촉이 가능한 용도는 총대장균군, 결합잔류염소 등의 항목은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했습니다.

※ 청소·화장실 용수 수질기준 : 총대장균군수(불검출), 결합잔류염소 0.2이상 등

- 인체 접촉이 없는 공업 용수 등은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 목적 및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.

※ 공업 용수의 경우 사업장의 이용 특성에 맞게 수요처와 공급처간 협의를 통해 용도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함
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법령 > 현행법령 > 물의 재활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물 재이용 용도, 수질기준 현실화

- 추진배경 : 민간 및 지자체의 건의 내용을 등을 반영하여 수질기준을 현장에 맞도록 개선
- 주요내용 : ①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, 인체 접촉가능용 또는 수질기준 강화
② 공업용수 법정 수질기준을 폐지하고 수요처, 공급처 간 협의로 수질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함
- 시 행 일 : 2016년 3월 5일

11.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

환경부 정책총괄과 ☎ 044) 201-6650

환경오염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- 지금까지 환경오염피해자는 피해사실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, 2015년 1월 1일부터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이 법제화되고 정보청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증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아울러, 환경책임보험의 도입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되며, 원인제공자 미상, 무자력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법령 > 현행법령 > 환경오염피해구제법

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

- 추진배경 :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
- 주요내용 : ①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를 도입
②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도입
③ 원인제공자 미상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제급여 제도 도입
- 시 행 일 : 2016년 1월 1일 (환경책임보험 관련 법 제17조는 2016년 7월 1일 시행)

12. '사업비 환수금의 독촉' 조항 신설

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☎ 044) 201-6668

사업비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'사업비 환수금의 독촉' 조항이 신설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독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였으나, 2016년부터 '사업비 환수금의 독촉'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(참고)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> 알림/자료 > 자료 > 법률/규정 >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

'사업비 환수금의 독촉조항 신설

- 추진배경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상위규정인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'사업비 환수금의 독촉'조항이 신설됨에 따라,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
- 주요내용 ① 사업비 환수금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'사업비 환수금의 독촉'조항을 신설함으로써, 환수금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환수금 체납액 등을 명시하여 환수금 납부를 독촉하고 체납액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시 행 일 (미정)

13. 파생모델별 환경표지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

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☎ 044) 201-6669

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2015년 2월 1일부터 환경표지 인증이 기존의 파생모델별 인증에서 제품별 인증 방식으로 바뀝니다.

- 지금까지 전체 인증제품의 약 70%를 차지하는 파생제품에 대해 각각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,
 - 2016년 2월 1일부터 파생제품의 모체가 되는 기본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신청하면 되어,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.
- ※ (제품별인증 예시) 형광등 100W, 200W 등 모델별 인증 → '형광등' 제품 인증

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 > 법령/정책 > 환경정책 >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고시

파생모델별 환경표지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

- 추진배경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2015년 2월 1일부터 환경표지 인증이 기존의 파생모델별 인증에서 제품별 인증 방식으로 전환
- 주요내용 ① 2016년 2월 1일부터 파생제품의 모체가 되는 기본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신청하면 되도록 고시 개정 (예: 형광등 100W, 200W 등 모델별 인증 → '형광등' 제품 인증)
- 시 행 일 2016년 2월 1일

14.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☎ 044) 201-6757

2016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,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됩니다

- 환경보건법 제정(2009년 3월 22일) 후 어린이 활동공간 지정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
- 환경보건법 제정 후 설치시설은 지자체·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, 이전 시설은 법 적용을 2016년(또는 2018년) 이후로 유예를 받았습니다.
- 따라서 그간 법 적용이 유예된 시설 59천개소*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*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임 (430㎡미만 사립 어린이집·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)

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

- 추진배경 도로·마감재·토양 등의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설정 (2009년 3월)
* 어린이활동공간 : 어린이놀이시설, 어린이집(보육실), 유치원·초등학교·특수학교(교실), 초등학교 도서관
- 주요내용
 - ① 사용재료 부식·노후화
 - ② 도로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
 - ③ 방부목재 사용여부
 - ④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, 폼알데하이드 방산량
 - ⑤ 모래, 토양 기생충(란) 검출여부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(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)
* 430㎡미만 사립 어린이집·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

1. 기상정보 선진화, 슈퍼컴퓨터 4호기와 함께

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☎ 043) 711-0230

급변하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국지적 위험기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수치예측모델 향상에 필요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이 구축됩니다.

-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(3호기)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(누리, 미리*)가 2016년 3월에 정식 가동하게 됩니다.

* 누리, 미리: 대국민 공모를 거쳐 당선된 슈퍼컴퓨터 4호기(최종분) 명칭

- 2016년 6월부터는 슈퍼컴퓨터 4호기(누리, 미리)에서 가동할 전지구예보모델의 해상도 (25km → 17km)가 향상되며, 한반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(해상도 3km)과 장기예측모델(Glosea5) 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.

- 또한 국가 정책 결정(탄소배출, 의료 등)에 필요한 과학적·정량적 객관 자료 생산을 위하여 고해상도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(전구 60km, 8,000년 적분)도 슈퍼컴퓨터 4호기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.

슈퍼컴퓨터 4호기 가동으로 위험기상의 사전 대응능력과 강수 정량예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

(참고) 기상청 홈페이지 > 행정과정적 > 보도자료 > 기상용 슈퍼컴퓨터(4호기) 낙찰예정사 선정

기상청 슈퍼컴퓨터 4호기 운영

- 추진배경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 운영에 따른 슈퍼컴 4호기 도입·운영
- 주요내용
 - ① 전지구수치예측모델 해상도 증가 : (현재)25km → (2016년)17km
 - ② 국지양상불모델 신규운영 : 3km, 25멤버
- 시 행 일 2016년 3월(예정)

2.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 전면개방

기상청 기상기술융합팀 ☎ 02) 2181-0906

기상청은 2016년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방합니다.

-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분석·활용할 수 있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2015년 11월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개방하였습니다.

플랫폼 이용 안내

| 이용 방식 | 이용 환경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웹포털(big.kma.go.kr) 접속 • 회원가입 및 플랫폼 이용신청 • 최대 1년 이용(연장 가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전산자원(서버, 스토리지 등) 제공 • 분산처리(Hadoop), R(분석S/W) 제공 • 분석이 용이한 과거 기상데이터 제공 - 관측, 예보, 수치자료, 기상지수 등 |

- 2016년 6월부터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여 스타트업, 시장진입자 등 민간에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.

(참고) 웹 포털 big.kma.go.kr

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 전면개방

- 추진배경 기상기후 빅데이터 외부 활용 확산 및 가치 창출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기반 조성
- 주요내용 기상청의 방대한 기상기후 데이터를 인터넷(웹)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방
- 시 행 일 2016년 6월

3.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 확대

기상청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☎ 02) 2181-0654

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가 업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, 제공되는 콘텐츠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.

- 2015년 5월부터 정식 운영 중인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은 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 되었으나, 2016년 2월 부터는 업무망에서도 사용가능함에 따라 망분리 기관에서 업무망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한 기상상황 파악 및 유기적인 방재대응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-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정식운영 이후 243개의 전체 지자체를 포함하는 500여개 이상의 기관에서 방재담당자들이 활용 중이고,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인 기관에서도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또한, 하반기에는 방재기상정보서비스로 제공되는 위험기상감시, 통합기상분석 이외에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.

- 기존 콘텐츠 이외에 그래픽캐스트*, 뇌우감시추적* 및 3차원 기상표출* 등 고급 분석기능이 포함된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범국가적인 기상재해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* 그래픽캐스트(기상상황 상세설명 추가 및 기상모식도 제작 가능), 뇌우감시 추적(뇌우 또는 호우 가능성이 있는 강한 대류셀의 탐지 및 이동예상), 3차원 기상표출(대기의 입체분석이 가능하도록 3차원적인 분석 가능)

(참고) 웹페이지 afso.kma.go.kr

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 확대

- 추진배경 선진기상기술의 확산을 통한 범국가적 위험기상 대응능력 향상
- 주요내용 ① 망분리 기관의 업무망에서 활용하도록 행정망 영역 서비스 실시
② 방재기상정보서비스 콘텐츠 확대(그래픽캐스트, 뇌우감시추적, 3차원분석)
- 시 행 일 2016년 2월(행정망 서비스), 2016년 10월(콘텐츠 확대)

4. 3차원 기상분석 날씨해설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

기상청 예보국 위험기상대응팀 ☎ 02) 2181-065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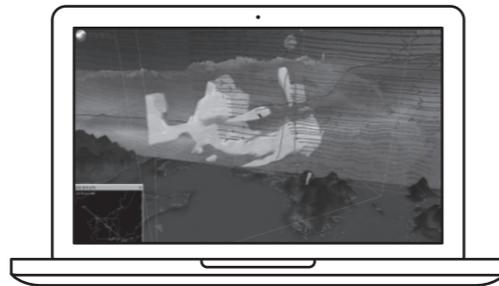
날씨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·입체적 해설 동영상 제공으로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아집니다.

- 3차원 가시화 도구(3차원 기상표출시스템, GloView) 개발로 대기의 입체적인 구조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용이해짐에 따라, 2016년 2월부터 날씨예보에 대한 기상 전문가의 과학적·입체적 해설 동영상이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.
 - 단기 및 중기예보에 대한 캐스터 중심의 단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, GloView 등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문예보관의 3차원 대기구조에 대한 현실감 있는 동영상 제작
- 특히, 국민의 생명과 재산, 사회적 영향이 큰 위험기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상되는 영향(위험노출) 등 콘텐츠를 확대·제공함으로써, 국민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기존 날씨해설



전문 날씨 서비스(예시)



3차원 기상분석 날씨해설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

- 추진배경 전문예보관의 3차원 분석 중심의 날씨 해설 동영상 대국민 서비스
- 주요내용
 - ① 단기 및 중기 예보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·입체적 날씨 해설
 - ② GloView(3차원 기상표출시스템) 등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한 대기구조의 현실감 있는 동영상 제작
- 시 행 일 2016년 2월 (예정)

5. GIS 기반의 태풍정보 동적 제공

기상청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☎ 070) 7850-6371

지리정보시스템(GIS)*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태풍 상세정보를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자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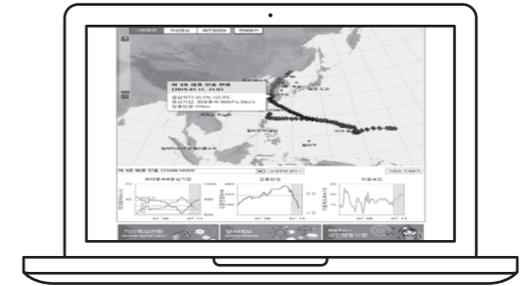
* 지리정보시스템(GIS: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): 다양한 정보를 지리적 공간에 표출해주는 시스템

- 기존 태풍정보에 담을 수 없었던 다양한 태풍 상세정보를 동적 이미지로 표출합니다.
 - 선택지점(자신의 위치)과 태풍의 최근접 거리·시간 표출, 태풍정보와 위성영상 중첩기능 등을 제공하여, 방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.
 - 태풍과 관련된 기상정보(예: 특보, 예보)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.
 - 현재, 분리되어 운영 중인 열대저압부정보와 태풍정보를 통합하여 보다 쉽게 태풍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기존 태풍통보문



태풍 동적홈페이지(예시)



(참고 기상청 홈페이지) 날씨 > 태풍

GIS기반의 태풍정보 동적 제공

- 추진배경 최신 정보화 환경에 맞는 태풍정보 제공
- 주요내용
 - ① 지리정보(GIS)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태풍 상세정보 동적표출
 - ② 태풍정보와 관련 기상정보(예: 특보) 종합제공
 - ③ 열대저압부정보와 태풍정보의 통합
- 시 행 일 2016년 5월(예정)

6. 북극해빙감시정보 대국민 서비스 개시 - 해빙정보(해빙전망, 북극항로 해빙환경정보 등) 확대 생산

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☎ 070) 7850-5801

기상청은 북극의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“북극해빙감시시스템”의 정보를 확대합니다.

- 지금까지는 북극 전역 중심의 해빙정보(면적, 해빙표면거칠기)를 제공하였으나, 2015년 11월부터는 북극항로 주변의 해빙환경정보와 앞으로 3개월까지 위성기반의 예측정보를 추가 제공합니다.
- 누구나 북극해빙감시시스템 누리집 (<http://seaiice.kma.go.kr>) 뿐 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북극해빙환경정보를 접할 수 있어, 북극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본 사업은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북극해빙 관련 정보는 북극관련 연구, 북극항로 개척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(참고) 웹페이지 seaiice.kma.go.kr

북극해빙감시정보 대국민 서비스 개시

- 추진배경 북극정책 기본계획*(2013년 12월 10일 수립) 일부 이행
* 7개부처(미래창조과학부, 외교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기상청) 합동으로 4대 전략, 12개 추진과제 및 31개 중점 추진계획 마련
- 주요내용
 - ① 북극항로 주변 해빙분석 정보 제공
 - 6개 해역(베링해, 척지해, 동시베리아해, 랍테프해, 카라해, 바렌츠해)에 대한 해빙면적 및 해빙거칠기 정보
 - ② 북극해빙면적 전망 정보 제공
 - 통계예측모델을 기반으로 최대 3개월까지 해빙면적 예측정보 제공
- 북극해빙 감시시스템 개편시행일 2015년 11월 25일

7. 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(110번)로 확대 운영 - 기상상담서비스 강화(110번 연계, 예보 콜백서비스, 외국어 상담서비스 확대)

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☎ 02) 2181-0860

기상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 131번호를 110번 정부민원콜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기상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- 정부민원콜센터 110번(권익위원회)에 기상상담서비스를 추가하여 기상서비스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가 기존의 131번호에서 110번호가 추가되어 서비스 채널 다양화(2016년 1월)

예보변경을 즉시 알려 고객 생활 편익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기상상담 부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급변하는 날씨변화에 맞는 기상예보 변경 콜백서비스의 지역을 확대 운영(서울-경기지역 → 수도권 전지역, 2016년 4월)

국내체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국내 기상상황의 기상상담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- 평일(9시~18시) 외국어서비스(영어, 중국어)에서 휴일(9시~18시)까지 운영시간 확대(2016년 4월)

기상상담전화 110번호 통합 운영

- 추진배경 기상상담서비스(131번)와 정부민원콜센터(110번)간 실시간 상담전화 연동체계 구축 및 부가서비스 강화
- 주요내용 및 시행일
 - ① 기상상담전화 131번호와 110번호 연동체계 구축(2016년 1월)
 - ② 예보변경 콜백서비스 지역 확대(2016년 4월)
 - ③ 외국어 기상상담서비스 연중 확대운영(2016년 4월)

8.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

기상청 기상기술융합팀 ☎ 02) 2181-0909

기상청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웹기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

- 2011년 서울시 독거노인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취약계층 관리자 만여 명에게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 - 서비스 대상 : 독거노인, 영·유아,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리자
 - ※ 취약계층 보호자, 개인요양사, 양로원, 요양원 등 포함
 - 서비스 내용 : (6월~9월) 자외선지수, 식중독지수, 불쾌지수(12월~3월) 감기가능지수, 뇌졸중가능지수
-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통해 공문으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였으나, 2016년부터는 웹기반 신청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수시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이를 통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웹기반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

- 추진배경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건강보호 위한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접근성 강화
- 주요내용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신청방법 개선
- (2015년)지자체 공문을 통한 간접 신청 → (2016년)웹기반 개별 신청 가능
- 시 행 일 2016년 4월

9. 세계기상통신망 전환

기상청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 ☎ 02) 2181-0413

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(WMO)의 191개 회원국과 기상, 수문, 기후 관측자료를 세계기상통신망(GTS)을 통해 서로 교환하고 있으며, 2016년 2월부터는 기존의 속도보다 30배(128Kbps → 4Mbps) 빨라진 세계기상통신망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.

- 2015년 12월 1일 한국-중국 세계기상통신망을 전환하였고, 일본기상청과 2009년 3월 24일 현재의 속도인 128Kbps로 개선한 이후, 다시 4Mbps인 WMO 기간망(RMDCN)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속도의 개선을 넘어 1956년 세계기상기구 가입 이후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기상선진국에 걸맞는 세계기상통신망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.
-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해 입수하는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의 관측자료는, 한반도를 포함한 일기도의 생산과 수치예보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는데 특히, 전환된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해 입수하는 회원국의 추가 관측자료는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※ 슈퍼컴퓨터에서 운영하는 수치예보모델은 대한민국의 기상관측자료 뿐만 아니라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해 입수하는 전 세계의 관측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함

세계기상통신망 전환

- 추진배경 전 세계 기상자료의 원활한 입수를 위한 세계기상통신망 전환
- 주요내용 한국 - 일본기상청 간 국제전용회선을 세계기상기구 기간망으로 세계기상자료 입수체계를 전환 (128Kbps에서 4Mbps로 속도 개선 포함)
- 시 행 일 2016년 2월(예정)

1.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

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☎ 02) 2100-0423

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4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합니다.

- 감축목표는 교통사고·화재·자살·감염병 등 4대 분야 2012년~2014년 평균 사망자 수(26,292명) 대비 16%(4,201명)이며 각 지자체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.

| 구분 | 합계 | 교통사고 | 화재 | 자살 | 감염병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2012년~2014년 평균 | 26,292명 | 4,989명 | 300명 | 14,103명 | 6,900명 |
| 2016년~2018년 감축 목표 | 4,201명 (16%) | 844명 (16.9%) | 70명 (23.4%) | 2,203명 (15.6%) | 1,084명 (15.7%) |

- 국민안전처는 지자체별 감축노력을 지원하고, 지역별 확산거점을 만들기 위해 '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'을 추진합니다.

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

- 기간/대상 2016년~2018년(3년) / 17개 시도별 1개 시군구(총 17개소)
- 주요내용 안전인프라 개선(H/W)과 안전문화운동(S/W) 동시 추진(기존사업과 연계)
- 추진일정 공모(2015년 12월), 시도추천(2016년 2월), 최종선정 및 계획 승인(2016년 2월), 특교세 교부(2016년 상반기), 점검(연중) 및 평가(2016년 12월)

- 또한 범부처 지원 T/F 구성·운영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장애요인 제거 및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

2.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구축 및 서비스 개선

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, 국립재난안전연구원 ☎ 02) 2078-7820

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언제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'생활안전지도'의 전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

- 2015년까지 생활안전지도 4대분야*에 대해서 1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하였으나, 2015년 12월 말부터 전국(229개)으로 확대 서비스합니다.
* 4대분야: 교통안전, 재난안전, 치안안전, 맞춤형안전
- 또한, 추가 4대분야*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갑니다.
* 추가 4대분야: 시설안전, 산업안전, 보건식품안전, 사고안전
- 교통사고 돌발정보, 미세먼지, 대기지수 등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고 즐겨찾기 및 사용자 검색기능 추가 등 서비스 메뉴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웹과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며,
- 특히, 출퇴근 및 등하굣길 시간에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.

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 대국민 공개

- 추진배경 국민에게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
- 주요내용 ①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대상지역 확대(115개 시군구 → 229개 시군구)
② 실시간 서비스 제공(교통사고돌발정보, 미세먼지, 오존, 방사능 등)
③ 서비스 메뉴구조개선(4단계 이상 정보검색 → 2단계 수준의 단순검색)
- 시 행 일 2015년 12월 말(잠정, 서비스 공개 준비 중)*
* 2015년 12월 중순,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전국 구축완료 예정

3. 빅데이터 기반 「주간안전사고 예보」 한파, 폭염까지 확대

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, 국립재난안전연구원 ☎ 02) 2078-7820

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「주간안전사고 예보」의 예보분야를 한파와 폭염까지 확대합니다.

- 지금까지 화재, 농기계 등 10종의 안전사고 유형*에 대해서 예보가 되었으나,
 - 앞으로는 한파, 폭염 등 국민생명에 위협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보를 제공합니다.
- * 안전사고 유형 10종: 화재, 농기계, 물놀이, 어린이놀이기구, 산악, 승강기, 붕괴, 폭발, 기계, 추락
- 이를 위해 2016년에는 빅데이터 기반, 한파 및 폭염위험 예보모델을 우선 적용하고,
 - 2017년부터 예보 정확도 개선 및 신규예보 분야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.

2016년도 주간안전사고 예보 확대(한파, 폭염)

-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따라 한파, 폭염에 의한 사망자 다수 발생
- 주요내용 빅데이터(사망통계, 기상자료, 인구통계 등)를 활용하여 한파, 폭염 사망자 발생 위험 예보 생산 시도별 주간 단위로 4단계(관심, 주의, 경계, 위험) 위험예보
- 시 행 일 2016년 1월(잠정, 기술개발 및 예보 정확도 검토 중)

4.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

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☎ 02) 2100-0717

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,

-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(積雪)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(PEB)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합니다.
- 지금까지 건축물 주변 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하여 제설·제빙을 의무화하던 것을,
 -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여 대설로 인한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시설물 지붕 제설·제빙 의무화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(PEB구조) 및 아치판넬 등으로 시공된 다음 각 호의 시설물

-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
- ②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㎡ 이상인 공장
- ③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또는 2종 시설물

- 시 행 일 2016년 1월

5.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·관리 및 훈련 실시 의무화

국민안전처 민관제도담당관 ☎ 02) 2100-0971

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·관리 및 훈련 실시가 의무화됩니다.

-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면적 5천㎡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여객용 운수시설, 종합병원, 관광숙박시설*이 해당되며

-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2016년 3월 31일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고,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* 「건축법시행령」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

-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시 의무를 위반 시,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

- 추진배경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력 제고
- 주요내용
 - ①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·관리 의무화(신설)
 - 대상시설: 「건축법시행령」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(잠정*)
 - 매뉴얼 내용: 대응조직의 체계, 구성원의 역할, 상황별·단계별 대처방법 등
 - ② 훈련실시 의무화(신설): 매년 1회 이상(잠정*) 주기적으로 훈련실시
 - * 시행령 개정 추진중
- 시 행 일 2015년 12월 31일 다만, 민간시설은 시행일 후 3개월 이내 매뉴얼을 작성·관리

6.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

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☎ 02) 2100-0867

소방 용품의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, 벌칙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
※ 화재방지 기능을 가진 소방용품 중 국가에서 그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

- 「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」에 소화전함 등 35개 고시품목 규정

- 지금까지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.
- 2016년 1월 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또한,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(참고)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

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

- 추진배경 불법 소방용품의 유통 근절
- 주요내용
 - ①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경우 벌칙 부과
 - (대상)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,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·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
 - (내용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
 - ②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 부과
 - (내용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시 행 일 2016년 1월 25일

7.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신설

국민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 ☎ 032) 835-2445

수상사고 발생 시, 생명구조와 직결되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의 국가자격화 추진으로 구조능력을 내실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원합니다.

- 「자격기본법」상 국민의 생명·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어, 실제 구조가능한 적격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- 또한, 수상구조법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,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.



- >> 시험과목, 방법,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
- >>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, 교육과정, 관리·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
- >> 보수교육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

수상 구조사 관련 주요 개정내용

- 추진배경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제도 마련
- 주요내용
 - ①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함
 - ②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취득 후 2년부터 6개월 내 보수교육 필수
- 시 행 일 2016년 7월 25일

8. 재난예방과 대처요령을 스마트 폰에 모두 담았습니다

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실 ☎ 02) 2100-0019

지진, 한파, 낙상사고와 같은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「국민안전방송 안전韓-TV」(인터넷 방송)가 스마트 폰을 통해 모두 알려드립니다.

- 지금까지는 PC를 통해서만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접속기기에 관계없이 모든 IT기기에서 시청이 가능하고
- 「스마트 DMB 앱」이 설치된 고객들은 바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.

안전韓-TV는 재난의 유형별, 계절별, 생애주기별로 원하는 영상 검색이 가능하고,

- 특히, 저학년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재난안전 영상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.

(참고) 안전韓-TV 홈페이지: tv.mpss.go.kr

국민안전방송 안전韓-TV 홈페이지 소개

- 운영목적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한 생활 속 안전 정착
- 주요내용
 - ① 안전韓-TV: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 전문 인터넷방송(280여 편 보유)
 - ② 영상정보
 - 계절별: 황사, 폭염, 태풍, 집중호우, 폭설, 저체온증 등 예방 및 대처요령
 - 유형별: 화재, 붕괴, 물놀이, 화상, 심폐소생술 등 예방 및 대처요령
 - 생애주기별: 보행, 교통사고, 산악, 낙상사고 등 예방 및 대처요령
 - 다문화: 필리핀, 캄보디아, 태국, 베트남, 몽골,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행동요령